

# 1993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議案番號

253

提出日字：1994. 9. 16

提 出 者：沙下區廳長

## 1.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제125조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제38조의 規定에 의거 前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고자 함.

## 2. 主要内容

가. 歲入決算 總括

(단위：백만원)

| 구 분     |                              | 예 산 액  | 징 수 결 정 액 | 수 납 액  | 미 수 납 액 |
|---------|------------------------------|--------|-----------|--------|---------|
| 합 계     |                              | 65,501 | 69,944    | 66,255 | 3,689   |
| 일 반 회 계 |                              | 62,920 | 66,676    | 63,571 | 3,105   |
| 과목      | 지 방 세                        | 12,345 | 13,232    | 12,445 | 787     |
|         | 세 외 수 입                      | 24,057 | 27,046    | 24,728 | 2,318   |
|         | 조 정 교 부 금                    | 18,289 | 18,289    | 18,289 | 0       |
|         | 보 조 금                        | 8,229  | 8,109     | 8,109  | 0       |
| 특 별 회 계 |                              | 2,581  | 3,268     | 2,684  | 584     |
| 과목      |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 165    | 240       | 225    | 15      |
|         | 의 료 보 호 기 금                  | 1,679  | 1,756     | 1,673  | 83      |
|         | 새 마을 사업 소득                   | 93     | 98        | 91     | 7       |
|         | 주차장 특별 회 계                   | 405    | 1,097     | 618    | 479     |
|         | 주거환경 개선 사업                   | 209    | 47        | 47     | 0       |
|         | 장 립 유 수 지 이 설<br>공 유 수 면 매 립 | 30     | 30        | 30     | 0       |

## 나. 歲出決算 總括

(단위 : 백만원)

| 구                          | 분                               | 예산액    | 예산성립<br>후증감액 | 예산<br>현액 | 지출액    | 의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합                          | 계                               | 56,803 | 8,698        | 65,501   | 50,356 | 9,235      | 5,910 |
| 일                          | 반 회 계                           | 54,222 | 8,698        | 62,920   | 48,216 | 9,235      | 5,469 |
| 과<br><br><br><br><br><br>목 | 의 회 비                           | 515    | 0            | 515      | 483    | 0          | 32    |
|                            | 일 반 행 정 비                       | 12,352 | 1,187        | 13,539   | 11,728 | 961        | 850   |
|                            | 사 회 복 지 비                       | 12,816 | 509          | 13,325   | 12,259 | 377        | 689   |
|                            | 산 업 경 제 비                       | 1,611  | 0            | 1,611    | 1,446  | 67         | 98    |
|                            | 문 화 및 체 육 비                     | 765    | 67           | 832      | 494    | 260        | 78    |
|                            | 민 방 위 비                         | 708    | 0            | 708      | 678    | 0          | 30    |
|                            | 지원및기타경비                         | 1,200  |              | 1,200    | 588    | 0          | 612   |
| 특                          | 별 회 계                           | 2,581  | 0            | 2,581    | 2,140  | 0          | 441   |
| 과<br><br><br><br><br>목     | 영 세 민 생 활<br>안 정 기 금            | 165    | 0            | 165      | 158    | 0          | 7     |
|                            | 의 료 보 호 기 금                     | 1,679  | 0            | 1,679    | 1,666  | 0          | 13    |
|                            | 새 마을 사업 소득                      | 93     | 0            | 93       | 39     | 0          | 54    |
|                            | 주 차 장 특별 회 계                    | 405    | 0            | 405      | 231    | 0          | 174   |
|                            | 주 거 환 경 개 선 사업                  | 209    | 0            | 209      | 44     | 0          | 165   |
|                            | 장 립 유 수 지 이 설<br>공 유 수 면 매 립 사업 | 30     | 0            | 30       | 2      | 0          | 28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4. 덧붙임 : '93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 검사 의견서

釜山直轄市 沙下區

# 決 算 檢 查 意 見 書

自 1993年 1月 1日  
至 1993年 12月 31日

'93年度 歲入歲出

## 決 算 檢 查 委 員 會

## 決算検査 意見書

釜山直轄市 沙下區廳長 貴下

- 本人 等은 地方自治法 第125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釜山直轄市 沙下區廳의 1993年 自治區 歲入・歲出決算書와 同附屬書類, 會計帳簿 및 關聯證憑書類를 檢查하였습니다.
- 이 檢查를 實施함에 있어서 本人 等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7條에 列擧된 事項을 檢查範圍로 하여 自治區議會의 決算 檢查시 着眼事項(사의사 13130-99)과 會計監查 基準을 遵行하였습니다.

本人 等の 檢查 結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歳入分野

### 1. 未收納額에 대하여

- 過年度 未收納額 2,739,780千원에 대해 실제 收納額은 16% 수준인 432.361千원에 불과한 반면 '93年度 歳入豫算 徵收 決定額 중 未收納額 발생액이 1,375,456千원이어서 缺損處 分額을 제외한 未收納 總額이 3,581,933千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未收納額을 줄일 수 있는 特別對策을 講究해야 합니다.

### 2.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에 대하여

- '93年度 歳入豫算額 중 補助金 및 移越額을 제외한 실질예산인 融資金 回收 收入의 徵收決定額은 1,618千원에 불과하나 融資金 未回收額 殘額은 82,791千원인 바, 回收 豫定期間이 이미 經過되고 正常的 回收 可能性이 극히 희박한 상당액이 계속 移越되고 있으므로 償還期間 延長이나 減免措置 등 規定上の 措置를 積極 活用하여 債權金額을 現實化 해야 합니다.

### 3. 滯納額 管理 臺帳의 整備

- 滯納額의 管理는 地方財政法 第108條 2項에 의거 關聯帳簿를 作成 備置하여, 未收納 事由, 回收 및 變動事項 등의 把握에 徹底를 기해야 하나, 臺帳 整理 및 管理가 일부 부실하여 關聯滯納額의 實在性 確認이나, 回收 可能性 검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整備 및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입니다.

## II. 歳出分野

## 1. 一般會計

## 가. 歳出豫算 現況

(단위 : 원)

| 구 분   | 세 출 예 산 액      | 예 산 결 정 후 증 감 ( △ ) 액 |     |            |           |                 |
|-------|----------------|-----------------------|-----|------------|-----------|-----------------|
|       |                | 전 이                   | 년 월 | 도 금        | 예 비 비 용 액 | 전 용 · 증 감 (△) 액 |
| 전 년 도 | 48,920,604,000 | 10,497,786,000        | 0   | 25,491,000 | 0         |                 |
| 당해년도  | 54,222,071,000 | 8,698,342,000         | 0   | 45,866,000 | 0         |                 |

|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 59,418,390,000 | 45,333,533,330 | 8,698,325,580 | 5,386,522,090 |
| 62,920,413,000 | 48,216,234,430 | 9,234,923,000 | 5,469,255,570 |

- 豫算額は 54,222,071,000원이었으나 前年度에서 8,698,342,000원이 移越되어 豫算現額は 62,920,413,000원이었고
- 歳出 豫算 轉用額は 豫算額の 0.08%인 45,866,000원이었으며 轉用の 主要内容은 官署運營費의 不足으로 이는 追更豫算編成時 精確한 計上이 要求됩니다.
- 支出額は 豫算現額の 76.6%에 해당하는 48,216,234,430원이었고
- 移越額は 9,234,923,000원이었으며 그 主要内容은 한나모자원 대티고개간 道路擴張 工事의 補償協議 遲延과 서여중 道路開設工事의 都市計劃線 變更에 따른 事業 遲延, 효림국교 주변 道路開設 工事의 工期 不足 등에 기인합니다.
- 不用額は 豫算現額の 8.7%에 해당하는 5,469,255,570원이었으며 不用額の 主要事由는 豫算節減 및 豫算執行 殘額 등에 기인합니다.

## 나. 歳出豫算 科目別 支出에 있어서

- 自治團體負擔金の 年度중 支出이 豫算配定額을 超過하여 不當하게 支出된 事實이

있으며

- 豫算科目 중 41,450,000원(30件)은 豫算 執行 事由 未發生 등으로 不要不及한 經費를 豫算 編成 함으로, 豫算 死藏을 招來하였으며 이는 追加豫算 編成時 削減 措置하였어야 합니다.

다. 事故移越에 있어서

事故移越額 3,151,411,000원(26件)중 2,454,138,000원은 追加更正豫算에 의한 事業으로 4,005,867,000원(22件)이 策定되어 다음년도에 移越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追加更正 豫算編成時 會計年度內의 支出可能性을 合理的으로 豫測하여 보다 計劃的인 豫算編成 및 豫算執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特別會計

(단위 : 원)

| 구 분   | 세 출 예 산 액     | 예 산 결 정 후 증 감 (△) 액 |     |     |         |     |                         |
|-------|---------------|---------------------|-----|-----|---------|-----|-------------------------|
|       |               | 전 이                 | 년 월 | 도 급 | 예 사 비 용 | 비 액 | 전 용 · 증 감 이 이 용 체 (△) 액 |
| 전 년 도 | 1,323,000,000 |                     | 0   |     | 0       |     | 0                       |
| 당해년도  | 2,580,872,000 |                     | 0   |     | 0       |     | 0                       |

(단위 : 원)

|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 1,323,000,000 | 1,251,036,610 | 0     | 71,963,390  |
| 2,580,872,000 | 2,140,206,550 | 0     | 440,665,450 |

### 1) 歳出豫算 概要

- 豫算額은 2,580,872,000원이고 支出額은 豫算現額의 83%에 해당하는 2,140,206,550 원이었으며, 不用額은 豫算現額의 17%에 해당하는 440,665,450입니다.
- 不用額의 主要事由는 駐車場特別會計 및 住居環境改善事業 特別會計 豫備費의

不用으로 인한 것입니다.

- 위에서 지적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釜山直轄市 沙下區의 1993년 財政運營은 收支均衡이 취해진 堅實하고 計劃的이며 長期的 觀點에서 彈力的인 財政構造를 確保하기 위해 充分한 努力이 경주되었으며 積極的인 財政運營이었다고 認定합니다.

#### 釜山直轄市 沙下區

決算 檢査代表委員      金   成   燁

決算 檢査委員          朴   洪   宙

決算 檢査委員          孫   益   相